○○○검찰청

(0000-0000)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 : ○○○법원장 발 신 : ○○○검찰청

제 목 : 압수 · 수색 ·	· 검증영장청구(사후) 검 사 😲
	성명 ()
	주민등록번
피 의 자	(세) 호
	직업
	주거
변 호 인	
위의 피의자에	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압수 • 수색 •
검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압수・수색・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, 그 사유가 상당하다	
고 인정되므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.	
긴급 압수 • 수색 •	
검증한 자의 직급・성명	
긴급 압수·수색·	
검 증 한 일 시	
긴급 수색 • 검증한	
장소•신체 또는 물건	
긴 급 압 수 한 물건	
범죄사실 및 긴급 압수ㆍ	
수색 • 검증한 사유	별지 압수・수색・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
체포한 일시 및 장소	
세포인 될지 및 경도 (「형사소송법」 제217	
조제2항에 따른 경우)	
고세28에 떠는 3T)	
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	
행을 한 사유	
 신체검사를 한 자의	
선 별 · 건 강 상 태	
	□ 「형사소송법」 제216조제1항제2호(체포현장에서의 압수)
영 장 없이 압수한	□ 「형사소송법」 제216조제3항(범죄장소에서의 압수)
경 우 그 사 유	□ 「형사소송법」 제217조제1항(긴급체포시의 압수)
	□ 기타()
발부하지 않는	판 사 (1)